[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2.18>

제 호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 명(명 칭)		주 민(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자동차	등 록 번 호			
	차 종		용 도	
재교부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뒤번호판 □ 재봉인			
재교부사유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청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210㎜×297㎜(일반용지 60g/㎡)